## 주법은 건물 소유주와 임차인에 대한 이 중요한 권고 정보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캘리포니아 주 사법위원회를 통해서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공됩니다.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법부 웹사이트 www.courts.ca.gov를 통해서 이 양식을 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귀하가 이 문서와 함께 수령하는 요구서나 법원 소장에서 귀하의 건물 또는 부동산이 공공 장소에 출입할 장애인의 민권을 보호하는 하나 이상의 기존의 건설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귀하가 이 정보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귀하는 중요한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대중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 건물의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장애인 편의시설법을 준수하는 것은 심각하고 중대한 의무입니다. 귀하는 주 건설국 (Division of the State Architect) 웹사이트 *www.dgs.ca.gov/dsa*를 통해서 귀하의 법적 의무와 장애인 편의시설법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캘리포니아 주 장애인편의시설위원회(California Commission on Disability Access) 웹사이트 *www.ccda.ca.guide.htm* 에서도 제공됩니다.

**귀하는 중요한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동봉한 요구서나 법원 소장에 기재된 주장은 법원이 귀하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기 전에는 벌칙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요구서 또는 법원 소장 및 이 권고 정보를 수령했다고 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 반드시 귀하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법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위반 사항(들)을 시정했다고 확신한다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이 요구서나 법원 소장에 대해 귀하가 선정한 사람으로부터 도움이나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소장을 송달 받는 경우 귀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 또는대리를 받는 것이 귀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으나, 귀하가 자신을 대리하고 필요한 법원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를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변호사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법원 소장이 귀하에게 송달된 경우, 귀하는 소장과 함께 특정한 상황에서 귀하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옵션과 절차를 알려주는 별도의 권고 통지문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변호사의 위법 행위. 국한된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법은 변호사의 소송 전 요구서에서 금전을 요청 또는 요구하거나, 금전 수령을 위한 제의 또는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변호사의 요구서에는 해당 변호사의 변호사 협회 면허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통지서와 소송 전 요구서를 귀하에게 제공한 변호사가 주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변호사에게 받은 요구서의 사본을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팩스 번호: 1-415-538-2171, 우편 주소: State Bar of California, 180 Howard Street, San Francisco, CA 94105, Attention: Professional Competence)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주법은 건물 소유주와 임차인에 대한 이 중요한 권고 정보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손해 배상금 감소. 귀하가 소규모 자영업자이고 소장을 송달받은 지 30일 이내에 귀하에 대한 소장의 근거인 건축 관련 위반 사항 모두를 시정할 경우, 손해 배상금을 감소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해당 사안에 관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캘리포니아주 장애인편의시설위원회(California Commission on Disability Access)에 연락하여 사업주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업적 임차인. 귀하가 상업적 임차인일 경우, 주차장 등과 같은 공동 영역을 포함하여 영업을 위해 임차하는 부지의 일부 또는 전체 부분이 임대주의 책임이기 때문에 귀하가 대민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주가 귀하가 임차하는 일부 또는 전체 부분의 유지 보수 및 개선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고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임대주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